

紙 上 中 繼

公聽會 公述內容 要約

國際豫備審査制度

李 基 수(高大교수)

1. 國際豫備審査制度

—改正試案 第157條의 6의 2 第1項중 “第157條 第1項 또는……”은 “第157條의 4”가 정당
—……있는 자, 이외의 者인 경우 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用語 정비 필요.

2. 法令體制 정비

—……의 2, 3, 4의 조문형식을 과감하게 일련 번호로 정비.
—法令上 기간계산 방법을 年·月에서 “一日”로 통일.

3. 구체적 내용

—第8條 第4項 第2號중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은 [필요한] 사항으로 고침.
—第9條 第1項중 [1發明 또는 하나의 총괄적 發明]은 [하나의] 發明으로 고침.
—令第2條의 4중 第1項 第2號, 第3號, 第4號에 있는 “1獨立項”의 “1”을 삭제하고, 第2項을 삭제함이 더 체계적임.
—第42條 第3項중 [1년4월내]는 [出願公告 종료시]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第155條 第1項중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로 바

꿈이 타당함.

特許權의 公용징수 및 通常實施權 설정의 재정

李 준 구(辨理士)

1. 特許法 第51條에 관한 사항

—현행 特許法 第51條 第1項 第1號의 [실시]에는 전연 실시하고 있지 않은 特許發明이 포함되어 있고, 同項 第2號에서는 실시하고 있으나,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 또는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 수출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않는 特許發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第2號의 실시개념에는 第1號의 실시가 포함된 중복규정이므로 兩規定을 통합하여 [特許發明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적당하게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 改正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第1項 第1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이라는 문구는 필요없음.

—第1項 第3號는 [特許發明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입법취지 및 규정이 성질상 第1項 본문단서의 4년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4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모순이 있고,

—第1項 第1號와 第2號는 불실시의 경우이고, 第3號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서로 이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포함된 모순이 있음.

2. 재정에 대한 不服理由제한 규정 신설

—재정에 대한 不服 抗告審判을 청구하는 경우 行政審判法에는 異議申請制度가 없으므로, 改正試案 第51條의 10중 [行政審判法에 따른 異議申請에]를 삭제하여야 하고, 그 대신 [行政審判을 청구]로 고치는 것이 타당함.

發明者 保護強化

李 범 일(辨理士)

1. 國內優先權制度

國內出願人에게 개량이나 주요변경 가능성이 있는 出願補正이 자유롭지 못한 불리점을 균형잡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적극 찬성한다.

2. 補正却下에 대한 不服抗告審判制度 신설문제

—現行法上은 補正에 대해 審査官이 요지변경이라는 사유로 補正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구제수단이 없고, 다만, 원래의 出願내용으로 審査되어 拒絕査定되었을 경우 拒絕不服抗告審判에서 함께 항변하며 다시 補正書를 제출하는 수는 있으나 절차상 복잡하고 실효성이 의문스러웠으나,

—審査過程에서 補正却下토록 하고 이 결정만에 대해 不服抗告審判請求를 하는 방도가 마련되었으므로 적극 찬성한다.

3. 特許權의 存續期間 문제

—現行 規定의 出願公告日로부터 15년으로 되어있는 것은 出願이 審査請求기간 5년을 최대한 이용하는 등으로 存續期間을 최대한 연장하려 할 경우 제3자의 참여기회가 너무 늦어지는 등의 폐단을 감안하면 出願日로부터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한데 대해 찬성한다.

4. 無權利者의 出願과 正當權利者의 보호

—모인자가 特許를 받은 경우 無效審決이 확정되었을 때 그 特許出願公告日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권리를 出願하면 무효된 特許의 出願日에 出願한 것으로 보도록 돼있는 규정을 2년 이내로 그 제척기간을 단축한 것은 소극적으로 찬성.

—事由: 發明者의 보호는 法理上 적극적으로 出願을 원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 出願의사가 없거나, Know-How 상태로 보호하려는 者를 보호해야 할 이유는 없다.

特許權의 보호

申 석 균(韓國發明學會 會長)

知的所有權制度중 著作權에 대한 보호는 그 보호기간이 50년으로 장기간인데 비하여, 特許權 등의 보호기간은 15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發明을 獎勵보호 육성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特許權의 存續期間을 대폭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

國內優先權制

李 한 호(三星電子(株)特許部長)

改正試案 第42條의 第2項중 “優先權주장의 기초가된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한 明細書, 청구의 범위, 도면에 기재된 發明”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第1出願(外國出願)을 優先權 주장으로한 第2出願(國內出願)을 1년 이내에 하고, 다시 第2出願을 國內優先權 주장으로 하며, 第3出願을 第2出願日로부터 1년 이내하는 경우에는 第1出願의 優先權主張 기간이 1년 이상 계속 연장되는 효과가 있음.

—第1出願에 기재된 發明이 미완성 發明인 경우 이를 완성한 第3出願 또는 第4出願이 있을 때 까지 第1出願에 기재된 미완성 發明이 보호되는 모순이 있고,

—내국인의 改良發明을 보호하기 위한 國內優先權 제도가 오히려 외국인에게 유리한 면으로 역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同項에 “당해 先出願이 同項의 규정에 의한 優先權主張 또는 파리條約 第4條D(1)의 규정에 의한 優先權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당해 先出願에 관하여 優先權 주장의 기초로된 出願에 관한 出願을 할 때의 서류에 기재된 發明을 제외한다”라는 단서로 신설하여야 함.

補正制度

金성택(辨理士)

金관형(韓國發明特許協會
研修部長)

1. 補正制度에 있어 절차의 補正과 出願의 補正(明細書, 圖面の 補正)이 현재 同一條文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분리하고, 出願公告決定 등본 송달전의 補正과 결정등본송달후의 보정을 분리하여 補正시기와 내용을 명확히하였다.
2. 審査官이 주요변경된 補正書를 적절한 것으로 오인하여 特許된 경우 요지변경된 부분에 대한 無效審判請求 또는 訂正許可審判請求制度의 검토가 필요.
3. 訂正許可審判 규정에 의한 補正却下도 不服을 인정하여야 함.

- 特許法체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改正試案은
- ① 같은 내용의 條文의 순서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審決例, 判決例등의 정리와 관련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 ② 원래 같은 내용의 조문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해석이 생길 소지가 있고,
 - ③ 改正試案이 시행될 경우 각개정에 따른 出願마다 拒絕理由로 다른 條文을 인용하여야 한다는 실무상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기는하나 現行法 체제의 모순성이 이보다 더크므로 改正試案에서 의도하는 체제의 정비에 찬성하면서, 체제정비에 수반하여서 생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改正法의 시행전에 충분히 마련되어야 함. 예컨대 新舊條文의 대비표 또는 조건표나 법문해설집 마련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飲食物·嗜好物 및 植物特許

鄭갑택(味元食品(株)
研究開發室部長)

請求範圍 및

1發明 1出願

李宗완(辨理士)

物質特許와 微生物特許는 87.7.1부터 이미 許與하였으므로, 植物特許에 대해서 그 特許를 유보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현재 特許審査 관행으로도 飲食物·造成物의 제조방법으로 그 표현만 달리하여 出願한 경우에 조성물 자체에 특징이 있는 경우 特許를 허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우리나라는 서구와 다른 식생활문화를 갖고 있으므로 食品特許를 許與하더라도 타 산업에 비해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飲食物·嗜好物에 관한 特許는 마땅히 許與하여야 한다.

1. 特許請求의 범위와 特許發明의 보호범위
特許請求範圍 기재의 간결성이란 주관적·상대적 개념일 뿐, 객관적·절대적인 개념이 아님에도 改正試案은 청구범위의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PCT나 英國特許法등을 참작하여 간결성을 규정하고, 拒絕事由나 無效事由에 관해서는 日本特許法의 규정을 도입하여 이들을 뒤섞어 놓으므로서 간결성을 拒絕·無效事由로 규정하는 잘못을 범한 것으로 보이며, 特許請求範圍의 기재를 간결히 하여야 한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는 하나 拒絕이나 無效事由가 될 수는 없는 것임.
2. 第8條 第4項 第2號의 규정에 대하여
特許請求範圍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特許法체제 및 條文정비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면 조합에도 불구하고 난해한 [구성요건적 기능]을 규정하기 위하여 더욱 난해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發明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과연 그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오해되어 잘못 적용될 소지가 있는 이러한 사항을 日本法이 규정하고 있다하여 이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국가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됨.

3. 特許請求範圍의 기재방법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함.

特許請求範圍는 出願人の 권리사항에 관한 부분으로서 타인이 이부분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現行法이나 改正試案은 特許請求範圍의 기재 방법에 있어 施行令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마땅히 법으로 격상되어야 함.

植物特許 · 飲食物 또는 嗜好物の 特許

李 주 기(辨理士)

1. 植物特許

食物은 人間日常生活과의 긴밀한 접과 우리의 主 · 副食物의 技術 先進國과는 상위하다는 데는 다소의 위안감이 있으나, 그들 先進國의 독점무대가 된다면 서둘러 개방하여 화를 당하기 보다는 우리가 모든면에서 준비완성하여 그 시기를 선택함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다.

2. 飲食物 · 嗜好物 特許

食品自體의 不特許 입법취지인 공익의 해, 국민식생활의 보호등은 타당성이 없고, 現行特許 운영의 실제면에는 物質特許 微生物特許 醫藥特許등 食品特許 보다도 국민생활에 더 밀접하고 공익에 해를 끼칠수 있는 것 까지도 特許許與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한편 食品特

許를 現행 法制上 審査慣行上 特許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변칙적 · 우회적 방법으로 이미 特許되어 왔던 것이 실제이며, 이러한 일부 식품의 독점권 설정에서도 현사회에 큰 무리를 야기한바도 없어 食品特許의 실시가 크게 우려될 바 없다고 본다.

通常實施權 許與審判과 存續期間 制度

朴 宗 만(同和藥品工業(株) 開發部 次長)

1. 特許權의 存續期間

현행 우리나라 特許制度는 審査請求期間이 出願日로부터 5년, 실제 審査期間이 3~5년, 그 후 特許權 설정후 公告日로부터 15년으로 본다면 특수한 경우 실제적인 存續期間은 出願日로부터 23—25년이 소요되게 되어 타국에 비해 유례없이 긴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改正案의 취지대로 特許權의 存續期間은 出願日로부터 몇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改正案의 원칙에는 찬성하나 그기간을 2년 단축하여 18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 存續期間延長制度

存續期間의 연장은 特許權者 및 제3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改正案과 같이 特許法으로 규정하고 出願査定 절차를 취함으로써,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改正案 제2안을 찬성함. 다만 存續期間 연장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의 보완이 요망됨.

3. 通常實施權 許與審判

—改正案 제2안의 입법취지는 이용저촉관계 문제에 대하여 特許廳長의 권한으로 신속하게 판단토록 하겠다는 것이나 利用發明에 대한 通常實施權 許與는 그 기술적사항이 판단의 주요대상이므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준사법적 절차인 현행 [審判] 制度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審判節次에 의한 기간의 장기화는 우선 審判制度로 흡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利用·抵觸發明은 원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으면 登錄되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요건인 後願發明의 상당한 기술적 진보요건은 불필요함.

究院 企劃開發室長)

기술선진국의 特許權 선취등으로 인한 다소의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特許權 본연의 權利保護 및 技術開發의 촉진이란 더 높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현행 不特許事由로 되어 있는 飮食物, 嗜好物發明에 대하여도 特許를 許與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하지만 정부(농림수산부)가 중점 지원하고 있는 농어민 및 생산자 단체가 시행하는 地域特産物 및 傳統食品 육성사업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외조치가 절실히 요망됨. (☞)

飮食物·嗜好物特許

金 正 욱(韓國食品開發研



本 會 會 員 加 入

◎...本誌 紙面을 빌어 다음 會員의 加入을 환영합니다...◎

會 社 名	業 種	代 表 者 名	入 會 月 日	電 話
池 光 男 朴 鍾 具 (株) 三 元 A.P.I	(전기·전자)	개 明 인 개 金 孫 煥	(2.27) (3. 2)	277-1515 540-7001~3
(株) 人 圓 開 發	(자동차 부품)	文 明 煥	(3.16)	295-1991~4
湖 南 石 油 化 學 (株)	(자동차 설계)	金 孫 源	(4. 6)	277-8101
星 三 寶 產 業 (株)	(석유화학 제조업)	鄭 光 淳	(4.20)	796-5011~7
星 三 養 毛 皮 (株)	(신발·신발부품)	朴 重 植	(5. 6)	(051) 93-4391~5
(株) 錦 山 金 屬	(모피의류·의류부품)	李 重 浩	(5.19)	864-0078
(株) 韓 國 度 量	(金屬製品製造業)	孫 鍾 在	(5.29)	877-5800
金 瑞 一 特 許 法 律 事 務 所	(줄자·측정기계)	姜 東 敏	(5.30)	205-3211
	(변리사)	金 瑞 一	(6. 1)	753-6806

(안) 제24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개최 (내)

전시기간 : 1989. 9. 5~9. 19(15일간)
 장 소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출품자격 : 제한없음(단, 합작일 경우 2인이내의 공동출품만 인정)
 출품부분 : 시각디자인부문, 공예부문, 제품 및 환경디자인부문
 작품접수 : 1989. 7. 25~7. 27(3일간)
 접 수 처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관
 문 의 처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진흥부 전시과 (전화 742-2562~3)

상 공 부 장 관